

특수건물 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 필요

현대는 산업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급속한 공업화와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건물의 대형 고층화 추세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비례하여 이러한 건물들에 도사리고 있는 수 없이 많은 잠재적 화재 요인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때에 화재보험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물 적용 지역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전주의 7개 도시에서 울산·부천·수원·성남의 4개 도시를 추가하여 11개 도시 지역으로 확대되어 보다 폭넓은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보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을 방재 관리 업무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 아울러 화재의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조사 연구, 홍보 등 끊임없는 노고를 기울이고 있는 한국화재보험협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지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우리 회사는 건물 완공 당시부터 특수건물에 해당되어 지금까지 건물의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오면서 회사 업종의 특성상 방재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방재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재해를 막고 재해의 발생 요인을 찾아내 이를 개선, 제거하



조 명 연
〈롯데호텔 방재실장〉

여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은 모두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순간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자주 접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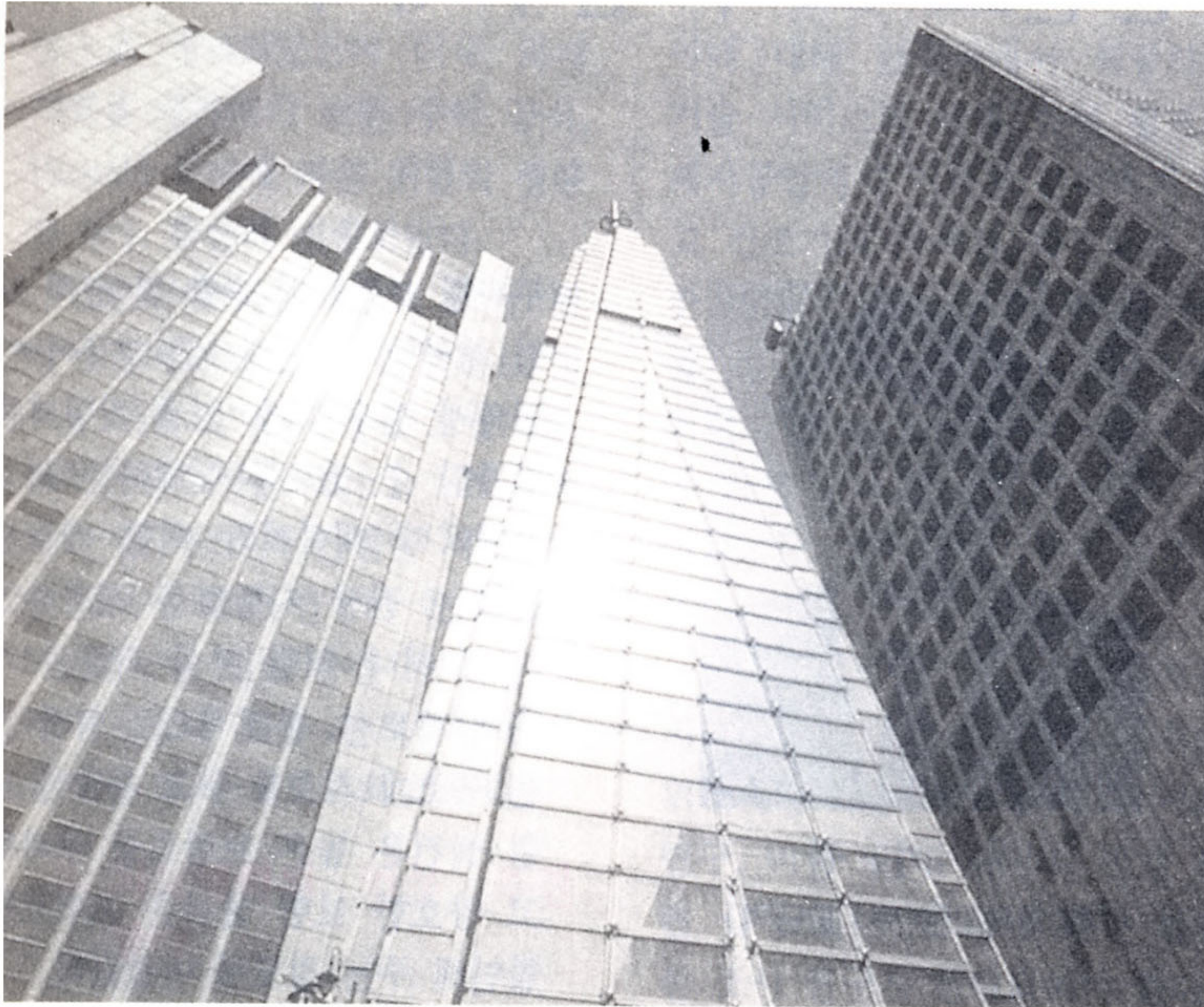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특수건물에는 불특정의 많은 사람이 수시로 출입하므로 방재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그렇기에 특수건물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하여 통보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나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물을 살수, 화재의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CO₂ 소화설비, 포 소화설비 등의 자동식 소화설비 장치, 그리고 자위 소방대의 신속한 진화를 위한 옥내·외 소화전설비, 소화활동상 필요한 연결송수관설

비, 채수설비, 배연설비, 방화구역상 필요한 설비, 기타 피난설비, 비상 발전설비 등의 각종 소방설비들을 설치하여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설비들은 구조와 기능들이 특수할 뿐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사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평소 정기적이고 철저한 사전 점검없이 그 설비의 결함이 발견되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항상 화재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전기, 가스, 화기사용 시설 등 발화 요인성 시설들은 물론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 피난설비 등의 소방시설들에 대해 철저한 정기점검들이 실시되어야 한다. 안전 관리상 무엇보다 중요한 소방시설들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가동 준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올바르게 안전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보험요율할인이라는 제도가 있다. 특수건물 관계자들 중에는 이 분야의 업무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여 약간의 시설 보완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나 신속 또는



개조 변경한 경우에도 제대로 할 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 요율할인이란 건물의 조건에 따라 차등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인데 소화설비 할인에 대해서는 '소화설비 규정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의 검사에 합격한 소화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 및 그 수용 동산에 대하여 소화설비 할인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방시설이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인명과 재산이 보호되느냐 보호되지 못하느냐에 결부되는 것이므로 소방시설이 양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소방시설별, 건물의 용도별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법령에 규정된 할인 요율은 설비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건

물주의 높은 관심하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방 전문 인력을 상주시키고, 완벽한 기능을 갖춘 방재실을 운영, 각종 방재시설의 감시, 점검, 작동 등은 물론이고, 화재시 신속한 진화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잘 훈련된 관리 체제를 갖춘 경우, 시설에 대한 할인기준 처럼 관리체제에 대한 할인 기준이 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보험료의 할인을 통한 소방시설의 개선 유도 못지않게 이들 시설의 유지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도 보험료 할인의 범위라든가 할인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번 화재보험 관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보험 할인 요율 기준을 개정하고 폭 넓은 홍보를 통하여 많은 특수건물

의 관계자들이 소방시설을 화재보험 요율서 규정에 맞게 보완, 적극적인 소방시설의 관리 유지를 하게 함으로써 특수건물의 위험관리를 활성화시켰으면 한다.

방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해의 예방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으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건물내의 각종 방재시설의 일상 점검 및 정기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적절한 기술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70년 초에 대연각 호텔의 대형 화재 사건이 화재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였다면 지난 2월 23일에 발생한 광주 해양도시가스 폭발 사고는 안전 관리상의 결함과 어처구니없는 순간적인 부주의가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가져 오는가를 가르쳐준 뼈아픈 교훈이었다.

어쨌든 재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사물이 어느 정도의 위험 요소는 늘 간직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끝으로 화재보험 관련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단순 강제의 강압적인 법률이 아닌 화재 예방을 통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막고 만약의 화재에 대한 인명 또한 재산상의 피해 보상을 위한 참여법임을 널리 알려 특수건물 관계자들의 자발적이고도 바람직한 위험관리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